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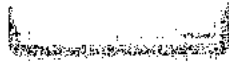
실시협약

1997. 4. 3.

건설교통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1997. 4. 3 .

건설교통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선립예정법인)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그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1997. 8. 28.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총 격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농림 시행령,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5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419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을 포함한다.
3.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0호(1995.12.30)에 의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393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차르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4868호 국가를당사자차르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6. 5. 27. 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의미한다.
7.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8.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특정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시설사업과 그 부속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9. 부속시설 : 본 도로 운영에 필요한 휴게소, 주유소 및 지역주민 이용시설을 말하며, 그 위치·규모·공사비·운영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계획에 의한다.
10.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최초 공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민자유자촉진법에 따른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본 도로 :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특정된 충남 천안 의 남원안 Jct.로부터 충남 논산의 논신 Jct.까지 본선 및 그 연결도로로 구성되는 총연장 80.66km의 도로시설을 의미한다.
13. 본 도로 부지 : 본 도로의 통과지역으로서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의미한다.
14. 도로공사비 : 본 사업중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운데 부대시설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의미한다. (제9호 부속시설공사비 포함)

15. **부대시설공사비** : 본 도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중 건축비, 터널설비, 조경시설, 전기공사비, 광통신로 공사비를 의미한다.
16. **부대사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민자유치촉진법 제30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부대사업을 의미한다.
17. **순공사비**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본 사업 건설을 위한 도로공사비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의미한다.
18. **한국도로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249호 한국도로공사법(개정법률 포함)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19.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20. **감리전문회사** : 95. 12. 30 자 청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시설사업기본 계획 3.4.2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지정하여 계약 체결한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한다.
21. **대수관**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22. **시공사**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비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3.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협약 당사자** : 정부의 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25.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26.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재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운영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도로와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8.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본 사업 지구간에 대한 준공평준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본 도로 구간을 개통하고 통행료의 징수 등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29.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30. 교통량 : 제6조 사업계획서상의 교통량을 의미한다.
31. 본 사업 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 수입과 부속시설사업 수입, 부대사업 수입 및 기타수입을 의미한다.
32. 부속시설사업 수입 : 사업시행자가 본 도로 운영에 필요한 휴게소, 주유소 및 지역주민 이용시설을 운영, 임대 등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33. 부대사업 수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촉진법 제20조에 의거 시행하는 부대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34. 불가항력 사유 : 본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다음의 사태를 포함한다.
 - (1) 전쟁 기타 적국의 침공행위
 - (2) 폭동, 혁명 또는 내란
 - (3) 예측불가능한 피해 (자연재해에 한정하지 아니함)
35.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6. 차입차입계약 :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37. 제반공급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송수 및 송유관 등 제반 공급(유빌리티)시설을 말한다.
38. 저서공과금 : 본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39. 총민간사업비 : 민간유치촉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 도로에 관한 총사업비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40.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유치촉진법상의 사용료로서의 통행료를 의미한다.
41. 최초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의미한다.
42. 통행료 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43. 기타 수입 : 사업시행자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44. 할인율 :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통행료등의 할수관계식에서 건설비용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45. 회계사 : 대한민국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중에서 수시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46. 예비비 : 물가변동비 및 물량변동비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47. 물가변동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시점부터 준공시까지의 물가가 변동되어 생기는 사업비의 변경분을 의미한다.
48. 물량변동비 : 실시설계 완료후 준공까지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이 변동되어 생기는 사업비의 변경분을 의미한다.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철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의 설계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본 사업 부지의 무상사용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부속시설의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무상 사용
- ④ 관리운영권에 의한 제3항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 및 부속시설사업

제 4 조 무상사용

민자유치촉진법 등 관련규정과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3조 제4항에 의한 관리운영권이 본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재탄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정부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종료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험부담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초의 사업계획과 원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여 정하기도 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본 사업기간동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위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제 8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9 조 법인설립 기한

사업시행자는 가능한 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전까지 법인을 설립한다.

제 10 조 총면간사업비

- ① 총면간사업비는 일괄 1995년 물변가기준 11,104억원으로 한다.

- ② 총민간사업비중 순공사비는 제15조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총민간사업비중 조사비, 설계비(시행중의 변경설계비 포함),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입준비금 및 예비비 등은 준공시 사업계획서될 기준으로 항목별 합당한 방법으로 정산한다. 단, 부대비 중 일반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 가격작성준칙(회세예규 2200.04-105, '95.7.10) 제19조의 요율에 의한다.

제 11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① 설계변경, 불가변동, **인위적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자유치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에서 제시한 설계자료가 실제 공사여건과 상이한 경우
 2. 정부의 본 도로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3. 민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실제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해 변동되는 공사비와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 ④ 불가변동으로 인한 총민간사업비 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근거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방법에 따르며, 순공사비의 지수조정을 산출기준 시점은 제15조 제2항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 설계 내역서상의 비목군 계수를 적용한다.
- 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의 변경내용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 ⑥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를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실시절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은 민자유치촉진법령에 따라 그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 13 조 추진

- ① 본 사업의 시설을 위한 고속도로 노선지정, 실시절계 중앙건설기술심의, 교통영향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도로구역결정 고시,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는 정부에서 추진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본 사업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4 조 보상업무

- ① 본 사업 부지의 매수업무와 이와 관련한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정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정부의 토지매수 등 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불행로 및 무상사용기간으로 조성한다.
- ③ 부대사업을 위한 부지의 매수업무와 관련한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15 조 순공사비

- ① 순공사비는 실시설계에 의해 산출된 순공사비에 정부고시 도로공사비와 사업계획서상의 도로공사비의 비율인 99.91%로 한다.

순공사비 = 실시설계후 순공사비(정부표준품셈기준)

$$\times 99.91\% \left(\frac{\text{사업계획서상의 도로공사비}}{\text{지선사업기본계획 고시 도로공사비}} \right)$$

- ② 순공사비 산정시 수량 및 단가는 실시설계 완료후의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 작성기준은 실시설계의 단가적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순공사비의 변경은 제11조 중 민간사업비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하고, 민자유치형 전담 시행중 개정(97.9.15)의 경우 공이윤등은 실시계획 승인시 결정한다.

- ④ 설계기준변경 및 공법변경 부분(포장공사 및 교량공사 등)은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다. 단, 경우와 본 사업시행자는 위 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 ⑤ 각가에서 제시하는 실시설계의 단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있는 이견을 제시할 경우 실시설계 단가는 조정할 수 있으며, 단가 조정으로 인한 차액은 순공사비에 가감한다.

제 16 조 공사기간

본 도로의 공사기간은 60개월로 한다. 단, 불가항력 사유, 정부의 귀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의 사전 협의한다.

제 17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감리전문회사가 확인한 본 도로 공사의 전체 공정과 당해년도 예정공정표 및 당해년도 시공분이 표시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소 공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본 도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이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8 조 공정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공사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심사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업이행보증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대보증서 또는 총민간사업비중 세제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및 부대비용 보험료, 대출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행지체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도로의 완공기일(본 협약에 의한 원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완공일을 기준으로 미완공 부분에 대하여 완공일 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민간사업비에서 기상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 제16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체상금은 연장된 공사기간 이후부터 산정한다.
- ③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손전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동행료 및 무상사용기간으로 조정한다.

제 21 조 보협가입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에 따라 보협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공사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 및 부속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자들을 시공자로 한 공동도급방식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관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도로 및 부속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업법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규칙의 준수 여부를 관리전문회사로부터 확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각리전문회사는 위 하도급자가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에게 건설업법 제23조(하도급인의 변경요구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인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중 재분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 기정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기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기정검사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사의 민원처리

본 사업의 노선변경 및 시공과 관련하여 도로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등과 관련된 민원은 정부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그밖의 노르 및 부대시설, 부속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 25 조 안전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장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추어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는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 권한의 위임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상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감리전문회사의 지정 및 계약
 2. 본 협약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4. 시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
 5. 기타 본 협약내용상 위임된 사항
- ② 위 제1항에 관한 사항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지고, 정부는 이를 보장한다.

제 27 조 공사책임감리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사업시행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리 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본 도로 공사에 대하여 동법 및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지정하는 공용기관에 ~~감리비율~~을 개설하여 내월의 감리비를 해당 월의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감리전문회사에 지급한다.
- ⑤ 감리전문회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정기보고하며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등은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보고하고 기타의 감리업무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행할 수 있다.
- ⑥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공사표지 등의 설치

본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공사안내 표지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경과 중심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입간판 및 표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9 조 정부지원사항

- ①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도로 및 부속시설의 공시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청에 대한 세관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② 정부는 본 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정부와 수입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지보상 업무의 집행 및 **보상금 지급**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 ④ 정부는 본 사업 완공 예정인 2002년말까지 경부고속도로중 권안J.C에서 본 사업구간의 시점인 천안J.Ct까지 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다.
- ⑤ 본 협약체결 이후 상업차관도입 등 정부의 민자유치속진을 위한 법령의 변경과 제도개선이 있는 경우 등 개선사항 및 변경내용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반영한다.

제 30 조 부속시설

부속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 부지조성에 따른 인·허가, 용지매수, 보상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부속시설의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하에 시행토록 한다.

제 31 조 부대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계, 개발, 관리, 운영,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 받는다.

- ② 부대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별도로 할 수 있다. 단, 부대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등은 정구가 관계법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한다.
- ③ 부대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3.2.5에 의거 작성한 사업계획서 10장 제3절의 주요내용에 정하는 바와 같이 친안의 풍세지구, 공주의 남동지구 및 논산의 내동지구로 나눈다.
- ④ 부대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해당 지자체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배지개발사업의 경우 폐적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의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토록 한다.
- ⑤ 풍세지구 부대사업은 국가의 기본정책 등에 맞추어 확대 개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그 확대개발로 인하여 생기는 추가 개발이익은 본 사업 또는 다른 부대 사업의 효과적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 ⑥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통행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부분 준공

- ① 국가정책적 세고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 도로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도로의 진척 준공전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도로의 관공구분이 대하여 부분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부분준공에 따른 통행료의 순수입이 있는 경우, 운영개시일 이후에 적용한 최초 통행료 산정시 이를 반영한다.

제 33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본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한 제반공급시설(전기, 통신, 가스, 상수, 송유관, 방오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및 사업시행자는 상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익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와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정하기로 한다.

제 34 조 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위공 3개월 전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완공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 보고서를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신청을 접수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③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즉시 본 도로에 대한 관리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소통행료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규정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도로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5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 확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필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주요시설물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농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기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될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시설부차 완료기한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도로관리사무소, 요금징수시설 및 교통관리체계 운영시설 등 본 도로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부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37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순찰차량이나 헬리콥터 등의 지원을 정부의 관계기관이 요청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도로의 교통관리체계를 전국고속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이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설치목적, 이용에 따른 편익, 본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협약도록 한다.

제 38 조 이동차량 자료 등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와 교통상황 및 통행료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교통상황 및 본사업수입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설정한 회계법인 등에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9 조 운영비용

- ① 본인은 계약한 운영비(1995년 기준)를 물변가격기준으로 4,513억원으로 한다.
- ② 운영기간중의 운영비가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료에 반영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초과운영비는 출지자의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 ④ 운영기간중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운송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운영기간중에 발생하는 회계감사비 및 제26조 제1항 4호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비 및 긴급유지보수비의 경우는 운영비에 포함하여 계상토록 한다.

제 6 장 통행료

제 40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②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은행도 중수 및 경산방면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간에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제 41 조 할인율

할인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V장 제3절에서 제시한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실질할인율 6.81%로 한다. 단,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에 의한 공사기간중의 3년반기 은행보통회사채의 평균유통수익율 및 평균소비자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할인율이 6.81%와 비교하여 $\pm 10\%$ (0.681%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6.81%에 기감하여 실질할인율을 조정한다.

【산식】

$$\text{실질할인율} = \frac{\frac{\text{실질할인율}}{(1+WACC)}}{(1+\text{물가상승율})} - 1$$

제 42 조 최초통행료

- ① 최초통행료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4.2.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의 함수관계식($\sum CC = CR = \sum(OR - OC) + \sum ANR1 + \sum ANR2$)에서 각 항부를 운영개시일이 포함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4조 제3항에 의해 운영개시일 30일전까지 확정한다.
- ② 제1항 함수관계식에서 운영개시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년도로 한 건설비용($\sum CC$)의 현재가치는 다음 각호에 의거 산출된 총민간사업비(이윤 제외)와 자본조달비용(자기자본조달비용 및 타인자본조달비용)으로 한다.
1. 총민간사업비(이윤 제외)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산정된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단, 공사기간중 불가항력 사유, 정부의 권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나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총민간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이를 포함한다.
 2. 자본조달비용은 제41조에 의한 실질할인율 및 사업계획서 제X장 제1절에서 제시한 물가상승율(5%)를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산식]

$$\sum[(\text{기별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금액}) \times ((1+R)^{N/2} - 1)]$$

$$R = (1 - \text{제41조예의한 실질할인율}) \times (1 + 5\%) - 1$$

N : 기별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시점으로부터 운영개시일까지의 기월수이며, 1개월이단의 날수는 1기월로 본다.

- ③ 이윤은 제2항 제1호에서 산출된 중립간사업비를 기준으로 민자유치촉진법령 제1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정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최초통행료의 확정과 함께 동 최초통행료와 제2항 제2호의 동가 상승율을 기초로 별첨1의 추정통행료 수입을 변경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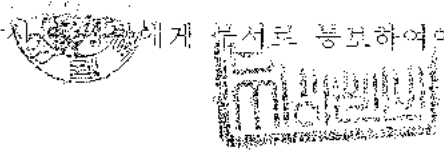
제 43 조 통행료의 조정

-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년도에 대한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통행료 조정은 전회계년도 결산 확정후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 ④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매 회계년도말 기준으로 당해년도의 통행료수입이 별첨1이 제시된 추정 통행료수위의 80%미반이거나 120%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그 미달 또는 초과분에 한하여 조정액 반영한다.
 2.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정부의 위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비용 등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3. 이자율 또는 환율의 현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자금의 과부족이 크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⑥ 제42조 및 본 조에 의하여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행료는 확정 또는 조정하는 경우, 그 합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 통행료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적정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하며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그 회계사가 산정한 통행료를 본 협약에 따른 통행료로 인정하기로 한다.

⑦ 제42조 및 본 조에 의거 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부방식 등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통행료수입 차질액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한 통행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회계사는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본 협약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4 조 재정지원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통행료를 조정하더라도 사유발생사업년도에 발생한 본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 48조에 의한 협약종료 요건발생 이후 운영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본 사업시행자의 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행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발생손실, 비용 또는 부족운영자금에 대하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및 자금기원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립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완료후 즉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집행한다.

제 7 장 불가항력 사유

제 45 조 책임부담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46 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에게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는 제46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48 조 협약의 종료

① 다음의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심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정부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사업시행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업시행자의 해산 또는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의한 경우(단, 이 경우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기간의 빈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47조에 따른 협의 기시후 60일 이내의 본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사유의 발생시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이 기한전에 종료되고 그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를 대체할 자금 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4.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 정부의 보상업무가 현격하게 지연되어 공기인장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사업시설(공사가 간략인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그 해지 당시의 영업권가격과 영업권을 제외한 사업시설물 자체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지명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영업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 제3항의 경우에 가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적정가격에 대하여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가인을 지정하여 그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며 평가인이 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적정가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을 지정하는 경우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평가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인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평가인의 위 서면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지명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당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위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원의 지급시점까지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인수한다. 다만, 대주단과 사전 합의되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다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행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농 채무액에 상응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⑧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4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⑨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본 사업의 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가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본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분쟁의 해결

제 49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실신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는 가급적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민사재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합의 관할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0 장 비밀유지

제 50 조 비밀유지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지된 상대방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11 장 자금의 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제 51 조 자금의 조달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될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능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제 52 조 협약 변경의 통지

정부는 본 사업기간중 대주단의 대출여부 및 대출조건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그 사유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주단 내리은행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1. 공사기간
2. 최초 통행료 산정 및 통행료 조정기준
3. 중민간투자비에 관한 사항(항목, 공부별 내용, 투입시기, 금액사후경산 사항의 기준금액 및 인정기준)
4. 통행료 산정에 적용될 할인을
5. 본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 및 승차의 경우 그 납입시기와 납입금액

제 53 조 행정처분의 통지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리한 행정처분을 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대주단 관리운영에 그 의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 54 조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자금차입계약시 채무불이행 사유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실행전에 정부와 사전 협의로써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5 조 기타 정부의 협조

정부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56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이 변경됨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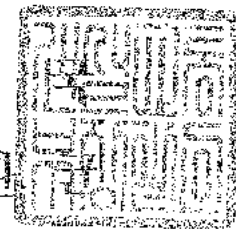
제 57 조 본 협약의 승계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모든 기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절차를 완료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997. 4. 3

대한민
건설교통부 장관 이 환



(가칭)천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사
주식회사 대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표이사 이 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가칭)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출자사는
본 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대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표이사

이 일 채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대표이사

장 동 럽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

대표이사

이 대 혼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대표이사

노 경 섭



주식회사 기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

대표이사

이 신 행



대야건설 주식회사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17블럭 12로트

대표이사

성 완 중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김 주 용



경남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표이사

김 학 용



한일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대표이사

이 창 진



삼정건설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2

대표이사

이 강 년

